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5.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2019. 9. 25.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및 달서센트럴더샵 사업주체가 의무 보육시설의 국공립 설치 운영을 신청하였으며,
- 운영체 선정을 위한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3에 의거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공립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합원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에서 2019. 10월에 의무보육시설 공립 설치·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 2019년 10.~11월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달서구청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서(안)에 대한 상호 조정을 거쳐 12월 2일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는 2019년 12월부터 입주한 598세대의 단지로서 보육시설은 면적 $185.55m^2$, 정원 43명 정도입니다.

○ 이어서 달서센트럴더샵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공립신청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합원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성당보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2019. 11월에 의무보육시설 공립 설치·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 2019년 11.~12월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달서구청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서(안)에 대한 상호 조정을 거쳐 2020. 1. 6.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달서센트럴더샵은 2020년 8월 준공예정인 789세대 아파트로서 보육시설은 면적 $304.4m^2$, 정원 48명 정도입니다.

○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와 달서센트럴더샵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할 운영체를 2020. 3. 11.부터 3. 18.까지 신청 접수하였으며 2020. 4. 28.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이현진, 박경선을 각각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달서센트럴더샵 아파트 어린이집의 운영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일정으로는 2020. 6월 의회동의, 6.~8월 위탁계약체결, 7.~9월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한 후 2020. 9.~10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 번 호	0082038
-------------	---------

제출일자: 2020. 5. 28.

제출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인역모아엘가 파크뷰 및 달서센트럴더샵 아파트 사업주체가 의무보육시설의 공립 설치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 운영체 선정을 위한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2,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가칭)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보육정원 (예상)	시설특성	비고
상인역 모아엘가파크뷰 어린이집	상화북로 162(상인동)	185.55m ²	43명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598세대 , 19년 12월 준공
달서센트럴더샵 어린이집	본리동 300-1번지	304.4m ²	48명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789세대 , 20년 8월 준공예정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5년

○ 운영체 선정 방법: 공개모집(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운영체(수탁자)

- (가칭)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달서센트럴더샵 어린이집을 각각 이현진, 박경선에게 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며 구 직영 시 보육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업무의 증가로 공무원 수 증가 등 행정의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더 유리

○ 민간 위탁 시 수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어린이집의 수준향상에 기여

3. 참고사항

- 어린이집 운영체 공모 및 심사계획: 붙임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 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의무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체 공모 및 심사계획

모아엘가 및 달서센트럴더샵 아파트 1)의무보육시설 설치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I 추진방향

- 운영체의 능력과 자격, 운영실적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
- 선정기준과 심사내용을 공지하여 운영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I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 보건복지부 지침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III 의무보육시설 현황

시설명(가칭)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보육정원 (예상)	시설특성	비고
모아엘가파크뷰 어린이집	상화북로 162(상인동)	185.55m ²	43명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입주민자녀 70% 우선입소권 부여	598세대
달서센트럴더샵 어린이집	본리동 300-1번지	304.4m ²	48명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입주민자녀 70% 우선입소권 부여	789세대

* 보육시설 정원은 내부시설 개·보수 후 면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300세대 이상 의무보육시설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운영체 모집

○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적합한 자

* 모아엘가 아파트와 달서센트럴더샵 아파트 어린이집에 중복신청 불가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원장자격 소지자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운영)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위탁운영사항을 의결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원장 경력 3년 이상인 자

○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 이상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그 밖에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운영체 모집 및 접수

- 공고기간: 2020. 2. 26.(수)~2020. 3. 18.(수)
- 접수기간: 2020. 3. 11.(수)~2020. 3. 18.(수)
- 공고방법
 -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 위탁대상시설 현황
 - 위탁기간 및 신청자격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선정기준, 방법 및 위탁조건 등
- 접수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접수장소: 달서구청 별관 6층 여성가족과
- 제출부수: 접수기간 내 2부 제출(원본1부, 사본1부 제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심사개요

- 일 시: 2020. 4월중

- 장 소: 4층 회의실

- 심사위원: 달서구보육정책위원

※ 수탁기관 및 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에서 배제

※ 사전검토를 위해 심사서류 및 심사기준안을 심사일 3일전에 위원에게 송부

※ 심사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안내와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 서약서 징구

- 심사안건: 모아엘가파크뷰 및 달서센트럴더샵 의무보육시설 운영체 선정

- 심사내용: 5개 분야 10개 항목

⇒ 어린이집운영계획(3),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4),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1), 운영체의 공신력(1), 운영체의 재정능력(1)

○ 심사기준

⇒ 어린이집 위탁체심사 기준점수표에 의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 서류심사(1차): 5배수 선정

총계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40점	25	10	5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2차)에 모두 참여

- 면접심사(2차 최종):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달서구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총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100점	40	35	10	10	5

- 심사방법: 심사당일 신청자가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 표 자: 법인·단체(원장 내정자), 개인(신청자)

※ 법인·단체는 수탁체 대표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함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최다득 점을 받은 운영체(자)로 결정함
-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 2차 면접심사 결과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 순으로 결정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 및 점수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합 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 보통 · 미흡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 보통 · 미흡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 보통 · 미흡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전문지식 및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10 8 6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우수 · 보통 · 미흡		5 4 3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 보통 · 미흡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건전성 -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실태	· 우수(지적사항 3회 미만) · 보통(지적사항 3회 ~ 5회 미만) · 미흡(지적사항 5회 이상)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 · 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단체·개인> · 2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5 4 3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20)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16)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12)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 타당성 · 참신성 · 전문성 ·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 타당성 · 참신성 · 전문성 · 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 타당성 · 참신성 · 전문성 ·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10)
-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8)
-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6)

②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
- 참여 중 (7)
- 미참여 (3)

②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
- ※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육교직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③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④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 · 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8)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6)
- ※ 신청자가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인 경우 우대 가능

⑤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5)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 ~ 5억 미만인 경우 (4)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3)

<단체 및 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5)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 (4)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 · 단체 · 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